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2일, 백선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선희의원)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

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것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이 상호 조율되어 교섭단체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앞당기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산입 시점을 각각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단기간 내 추가재정소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복무기간 전체’를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인정하되, 각각의 산입 시점은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